

6. 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및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8.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9.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0.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1.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1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및 신기술심사수수료, 인증수수료(간접비로 집행)
13. 연구과제 홍보 관련 비용(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14.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공고료 및 면접 수당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1.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 ①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1.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비 집행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2.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사용
3. 회의비 식대 사용 기준(자체기준이 없는 기관은 전문기관 제시 기준) 초과
4. 회의장소와 먼 거리에서 회의비 사용
5. 동일인이 비슷한 시간대 회의비, 야근식대, 출장비 중복 지급